부산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2호

부산광역시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5월 18일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1. 근거 법령

ㅇ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8308호, 2022.1.21.)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2223호, 2022.1.13.)

ㅇ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03호, 2022.4.6.)

ㅇ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의회규칙 제38호, 2022.1.13.)

2.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 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임용기간	근무예정부서	주요 업무
정책협력·입법·행정 지원요원 (건축)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8급상당)	1명	1년 (주당 35시간)	시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도시환경)	ㅇ행정사무 감사, 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ㅇ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친선교류 등 운영지원 ㅇ조례·예산안 등 소관 안건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ㅇ각종 의안 등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조사·연구 ㅇ기타 통상적인 위원회 홍보 자료작성 등 행정업무지원

※ 임용기간은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3. 응시 자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가.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ㅇ「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나. 분야별 자격요건

분 야	직 급	자 격 요 건
정책협력·입법·행정 지원요원 (건축)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및 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경력의 연구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

4. 보수 수준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8급(상당)	55,877천원	39,859천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연봉책정 가능

※ 상기 보수액은 주40시간 기준액으로 **주당 근무시간(35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접수	시험구분	시험일자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2.5.18.(수) ~ 5.30.(월)	‘22.5.31.(화) ~ 6. 3.(금)	서류전형	‘22.6.9.(목)	시의회사무처	‘22.6.13.(월)
		면접시험	‘22.6.24.(금)	시의회사무처	‘22.6.28.(화)

※ 시험일자, 시험장소, 합격자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나.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다. 2차 시험(면접시험)

○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거 개별면접

○ 평가방식 : 5개 평정요소 마다 상, 중, 하로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평정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하였을 경우 불합격 처리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부산광역시의회 및 시 홈페이지 게시(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2. 5. 31.(화) ~ 6. 3.(금), 9:00~18:00(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다. 접 수 처 : 부산광역시의회 총무담당관실 인력개발팀(시의회 2층)

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메일, 택배,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우편주소 :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의회 총무담당관 인력개발팀 임기제 채용담당자 (☎051-888-8334)
* 우편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 ‘**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우편접수는 마감일 우편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함**

7.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 응시수수료 : 8~9급(상당) 5,000원
> - **부산광역시 수입증지**(시청 2층 행복민원실에서 구입) 날인
> - 우편 제출할 경우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되며, 원서접수 시 **해당 증명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제출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 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

⑦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 근무기간, 부서, 직책,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행기관 관인 날인된 원본,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의 경력 인정되는 직무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제9호 서식>**' 추가 제출**
>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 폐업기관의 경우 ①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 ②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 ①, ②모두 제출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개 선택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⑨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⑪ 증명사진 1매 : 3.5×4.5cm(최근 6개월 이내)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②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③ 업무관련 자격증 또는 외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사본) 각 1부

-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④ 자기소개 관련 증빙자료

다.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

ㅇ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단, 어학능력은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최종합격 시 사실공증

ㅇ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원할 경우 관련 서류를 반환함

※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필요 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 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철저히 확인한 후 응시하기 바람

ㅇ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함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함

ㅇ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임용 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차순위자가 동점일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함
① 경력기간 ⇒ ② 자격증 유무 및 점수 순 ⇒ ③ 성과물 유무

ㅇ **합격자 발표 등 모든 일정은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

ㅇ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에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의회 총무담당관 인력개발팀(051-888-8334)으로 문의 바람

붙임 1. 직무기술서 각 1부.
2. 응시자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끝.